

經濟水域宣布에 따른 韓日간의 海洋管轄權 問題

李 相 冕*

I. 序 言

1996년 2월 20일 일본 정부 각의에서 경제수역을 선포할 것을 결의하자, 한국은 외무장관 성명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하여 경제수역을 선포할 것을 선언하였다.⁽¹⁾ 가지야마 일본 관방장관은 각의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해리 경제수역의 기점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다케시마(독도) 지역을 수역 설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²⁾ 일본정부 일각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다시 하고⁽³⁾ 일본이 경제수역 선포시 독도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국민은 더욱 경악하였다.⁽⁴⁾ 한일 양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경제수역을 각각 선포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양국의 경제수역은 중첩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양국은 독도 주변의 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를 둘러싸고 서로 충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김영삼 대통령도 이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독도 경비대에 전화를 걸어 주둔 경찰병력을 격려하고 급기야 독도 주변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등 이전에 일찍이 없었던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하였다.⁽⁵⁾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996년 4월 11일 총선 이전에 달아오르던 독도를 둘러싼 열기는 총선이 끝난 후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식어버리고 종래와 다름없는 평온을 되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教授

- (1) **한국일보**, 1996년 2월 21일, 1면. 일본 정부의 경제수역 선포 결정 선언 성명과 한국 외무장관의 경제수역 선포 성명은, **조선일보**, 1996년 2월 21일, 3면 참조.
- (2)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경제수역을 선포한다는 데에는 독도가 1982년에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국제연합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즉 새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암석(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볼 것이다.
- (3) 日외상 「독도발언」 배경: 「경제수역」선포 계산된 妄言, **동아일보**, 1996년 1월 10일, 2면.
- (4) 日「독도妄言」 청와대 강경기류: 獨島관련 어떤 협상도 없다, **서울신문**, 1996년 2월 11일, 3면 참조.
- (5) 海·空軍 합동기동訓練, **국방일보**, 1996년 2월 16일.

찾았다.

그러나, 경제수역 선포를 맞선언하던 1996년 2월 20일 당시의 사정과 그 당시 떠오르던 열기가 식어버린 4월 총선후의 상황은 적어도 법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일본은 지난 날처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포함하여 경제수역을 선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공교롭게도 한일 양국은 1996년 봄 비슷한 시기에 총선이 있었던 까닭에 독도 문제가 정치에 이용된 면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독도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제이며 독도를 위요한 경제수역 선포문제와 어우러져서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된 연유를 살펴보고 경제수역을 맞선포하게 된 우리나라가 유의해야 할 법적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⁶⁾

II. 日本이 經濟水域을 宣布하게 된 背景

일찌기 1977년 일본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200마일 배타적경제수역 제도의 채택이 기정사실화되고 구미 각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조하자, 태평양 방면에 한하여 200마일 어업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태평양 방면에 이렇다 할 지질학적인 대륙붕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200마일 어업수역을 선포하는 편이, 지질학상의 대륙붕이 일본과 이어진다고 생각되는 한국 중국 등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륙붕이 포함되는 200마일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것보다 현명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당시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양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륙붕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태평양방면에 200마일 어업수역을 선포하는 것이 편리한 점이 많았음은 물론이다. 이때 일본과 같이 역시 200마일 어업수역을 선포한 바 있던 옛 소련은 1984년 이를 200마일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대체한 바 있다. 그런데 일본은 어째서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비로소 200마일 어업수역 대신에 200마일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이 1994년 11월 16일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 새 해양법협약이라고 칭한다)이 발효하게 되자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새 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1977년 러시아를 의식하여 급한대

(6) 李相冕, 獨島—經濟水域 분리 논의 안된다, **동아일보**, 1996년 2월 26일, 5면.

로 선포했던 200마일 어업수역이 새 해양법협약에 따라 200마일 경제수역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뀐 데 주된 원인이 있었다. 또한 당시에 일본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200마일 어업수역의 선포를 유보하였던 동경135도以西의 東北亞 海域에서의 상황이 서서히 변해 일본 전역에 걸쳐 200마일 경제수역체도를 포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⁷⁾ 특히 한국 어선들이 대거 北海道 어장에 출어하여 일본 어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동북 아시아에서 200마일 경제수역이 포괄적으로 채택되는 날 일본 어선들이 한국이나 중국의 잠재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이 설사 저지된다 하더라도 北海道 어장을 포함한 일본내의 어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일본어민의 불만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이에 관련된 일본의 국가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경대 법대 출신들이 주된 멤버로 활약하고 있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의 논리적 성향으로 볼 때에도, 1994년 11월 16일 새 해양법이 발효되었는데도 기본적으로 이미 사문화된 1958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4개의 해양법협약에 기초하고 있는 1965년 韓日漁業協定이나⁽⁸⁾ 1975년 日中漁業協定은 하루 속히 개정되거나 폐기되어 새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와 아울러 일본이 독도를 포함하여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재개했다는 것을 공시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매년 일본 국회에서 외상의 답변을 통하여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고 그러한 취지가 담긴 공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 독도에 대해 그 이상의 권리 행사에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일본으로서는 독도를 포함하여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훗날 독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연을 만든 것이 될 수 있다.

Ⅲ. 獨島 領有權과 經濟水域의 關係

앞으로 독도 주변의 수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만일 일본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독도 주변의 광대한 수역에 양국의 관할권이 중첩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타협에 의해 해결되어 공동개발과 같은 법적 지위가 독도 주변 수역에 설정된다면,

(7) 수산청, **경제수역(EEZ) 선포에 대비한 어업대책 추진방향**(1996), 4면 참조.

(8)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1965년 6월 22일 조인, 1965년 12월 18일 조약 제166호 공포.

이는 우리가 실제로 영유하고 있을 뿐더러 역사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우리 영토인 독도가 해양에 대해 발양해 내는 법적 권원을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자고로 바다에 대한 권리는 육지로부터 연유한다. 독도가 100% 우리의 땅이므로 그 주변의 광대한 수역도 역시 100% 우리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영해를 제외한 독도 주변수역에서 일본 어선들이 한국 어선과 함께 조업을 해 왔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물론 일반규범인 새 해양법협약의 발효로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 해양법협약의 정신에는 어긋나는 것이며, 한일어업협정이 개정되어 한일 양국이 합의하에 해양으로의 관할권을 확장하는 날이 되면 독도 주변의 수역에서도 우리는 100%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독도 주변의 수역은 우리나라 여타의 해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권이 100% 행사되어야 한다. 독도가 100% 우리의 영토이므로 중첩되는 경제수역이 있을 수 없다. 한일 양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면, 우리의 선포가 독도 영유권에 기한 것이므로 합법적인 반면에 일본의 선포는 존재하지 않는 영유권에 기해 선포한 것이므로 불법적인 것이며 불법적인 것에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독도를 둘러싼 주변해역에서 일본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기해 중첩된 경제수역을 공동개발하겠다는 발상은 우리가 이미 영유하고 있을 뿐더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우리의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관계는 1:0인 것과 같이 바다에 있어서도 1:0이 되어야 하며, 독도를 타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독도가 발양해 내는 주변 바다에 대한 권리도 타협할 수 없다.⁽⁹⁾

일본측이 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새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는 것이 현재의 법규이므로 무인도인 독도를 무시하고 울릉도와 오키섬을 기점으로 하여 경제수역을 긋자는 것이다.⁽¹⁰⁾ 물론 이렇게 그으면 독도는 한일 중간선의 우리 편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그을 경우, 우리는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얻는 경제수역의 절반을 잃게 되는 것이며, 특히 그 가운데도 우리나라 영동 어민들이 오징어잡이에 의존하고 있는 울릉도 동북쪽에 위치한 비교

(9) 李相冕, 獨島 領有權을 둘러싼 韓日간의 海洋管轄權 問題, 大韓國際法學會 論叢, 1996년 제41권 제2호(통권 80호), 105-121면 참조.

(10) Masayuki Takeyama, “UNCLOS and Exclusive Economic Zone in East Asia,”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ast Asia, November 29-30, 1995, Seoul, at 4.

적 천해자인 대화퇴 어장의 상당부분을 잃게 된다. 이른바 이 중첩수역은 그 면적이 대략 남한 면적의 근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방대한 수역이다.⁽¹¹⁾

일본의 경제수역 선포에 맞대응하여 경제수역을 선포한다는 의지를 선언한 공로명 외무장관이 “여하한 상황에서도 독도가 우리편에 오도록 경제수역의 경계가 설정될 것”이라는 설명에서도, 이와 같이 독도를 무시하고 굶는 방안을 여러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암시한 것 같다.⁽¹²⁾ 그러나 이것은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는 도서의 정의에 얽매어 해석하는 것으로서 독도가 그야말로 없애버려도 괜찮은 아무 쓸모 없는 무인도로서 그 주변 해역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어나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독도는 지금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며 경비병력도 상주하고 있을 뿐더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독도의 주요 도서인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하면 마을도 조성할 수 있고 거기에는 숙박 시설과 애국의 도장 같은 것을 지어놓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변에 풍성한 어장이 있으므로 조그만 어촌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¹³⁾

그렇게 되는 날에는 독도가 우리 땅인 한, 어느 누구도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경제수역의 외적 한계를 정하는 데 알가알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조선중기 한때 우리가 왜구에 宥和政策을 쓴답시고 空島政策을 씌으로써 實效的 支配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일본측의 공박을 듣고 있는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 지금이라도 한껏 實效的 支配를 해나가자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 나라 일본 옆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부자에 비위를 맞추며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¹⁴⁾ 자고로 선린관계인 적이 많지 않은 양국 사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합리적인 태도가 바람직하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 경제수역을 맞선포하여 중첩수역을 만듦으로써 한국이 영유하던 1:0 상황을 적어도 경제수역에 있어서는 1:1의 상황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일본이 경제수역 선포에 이어 이렇게 하여 생기게 되는 중첩수역에 대하여 공동개발을 하자고 제안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일본 학자들도 종래부터 그런 식으로 주장해 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¹⁵⁾

(11) 한국은행 강릉지점, **영동지역 수산업의 특징과 과제 :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선포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1996. 4, passim.

(12) 獨島는 어떤 경우든 포함, **조선일보**, 1996년 2월 21일, 1면; 獨島는 우리 水域 확고 부동, **중앙일보**, 1996년 2월 21일, 3면 참조.

(13) 이상면, 獨島—經濟水域 분리논의 안된다, 앞의 주 6 참조.

(14) 박춘호, 獨島와 海洋法, 왜 혼동하나, **중앙일보**, 1996년 2월 12일, 6면 참조.

(15) Masayuki Takeyama, 앞의 주 10 참조.

IV. 經濟水域의 境界劃定은 꼭 必要한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동해에 있어서의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적어도 동해 중앙부에서는 불가능하다. 일본에서 제시하는 바 독도 주변의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중첩수역에 대한 공동개발 안도, 독도를 무시하고 울릉도와 오키 섬을 기점으로 하여 경계선을 긋자는 안도 독도를 영유하고 있을 뿐더러 영유권의 확실성을 굳게 믿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가간에 경제수역에 관한 경계선이 있으면 관할권의 행사와 자원의 이용 개발에 편리하겠지만 철저한 경계획정이 요망되는 대륙붕과는 달리 그 상부수역에서는 경계를 모르고 넘나드는 어족이 자원의 거의 대부분이므로 어업자원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의 당위성이나 필연성은 해저자원의 개발을 위주로 하는 대륙붕에서보다 덜하다고 보아야 한다.

동해는 半閉鎖海(semi-enclosed sea)이므로 연안국들이 개별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동해에 면한 연안국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동해 전체에 대하여 어족자원의 공동 보존과 이용의 방안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해 전체가 공동의 농장과 같은 어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각자가 제각기 남획을 하기보다는 어족자원의 최적생산을 위한 규칙을 정하여 입어를 자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965년에 체결된 韓日漁業協定이 1958년 해양에 관한 제네바 4협약들에 기초한 구태의연한 것이었는데도 그간의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탄생 등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존속되어 온 것은 바로 半閉鎖海의 이러한 특성 때문이었다. 연안 기선으로부터 12마일, 즉 지금의 領海 以遠에 漁業專管水域을 설치한다는 것이 이른바 “平和線을 팔아먹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체결 당시의 사정이 그로부터 십여년 후에는 오히려 우리 어선이 北海道 해역 등 일본 연안에 접근하여 어로작업을 하는 예가 급증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80년 10월 이후부터는 양국이 합의하여 北海道 주변수역에 출어하는 한국어선 수와 제주도 근해에 입어하는 일본어선 수를 자율규제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어선들의 공격적인 어로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던 北海道 연안 어민과의 충돌도 한일 정상회담 후부터는 위반조업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비록 옛 제도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적어도 한일간에는 동해에 있어서 공동 어로에 관한 질서가 나름대로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16) 수산청, 앞의 주 7 참조.

이와 같이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해양 질서를 경제수역 선포에 즈음하여 일시에 뒤엎어 버린다면 그 충격으로 인해 연안 어민들이 입는 피해는 막심할 수 있다. 지난 4월 한국은행 강릉지점에서 경제수역 선포로 말미암아 울릉도 동북부 대화퇴 어장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는 영동지방 어민들의 예상되는 타격을 검토하여 발표하여 세인의 이목을 끈 것은 바로 이런 예이다.⁽¹⁷⁾

그리하여 아마도 앞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하여 경계획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어업협정은 현존하는 1965년 체제와 경계획정을 한 상태하에서의 배타적경제수역 제도 사이에서 타협적인 제도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일본측은 양국 영해 외측에 40해리 범위 등 일정범위의 “漁業資源管理水域”을 설정하자고 제안해 온 바 있다.⁽¹⁸⁾ 물론 이것은 연안국이 조업 단속 및 위반시 재판관할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北海道 연안 어장에의 한국 어선 입어를 철저히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 수역의 폭원이 이룰테면 24마일이나 30마일 같은 것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일본의 경제수역 선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우리측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경계를 획정하지 아니하고 연안국의 “漁業資源管理水域”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수역제도의 완벽한 실시로 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共同規制水域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가칭 漁業資源共同管理水域 같은 것을 “漁業資源管理水域”以遠에 설치하게 될 기연을 마련하여 장차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시켜 동해 어자원의 공동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기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V. 經濟水域法에서 내건 中間線 概念

1996년 봄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排他的經濟水域法 제5조 2항은 關係國과 별도의 合意가 없는 경우 大韓民國과 關係國 간의 中間線 外側 水域에서는 우리나라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초안 단계에서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논의된 바 있었던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항국 또는 인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 합의에 따라 그 경계를 획정한다”는 초안은 삭제되었다.⁽¹⁹⁾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한 『排他的經濟水域및大

(17) 한국은행 강릉지점, 앞의 주 11 참조.

(18) *Ibid.*

(19) 排他的經濟水域法, 1996. 8. 8, 법률 제5151호.

陸棚에 관한法律』 제1조 2항에 의하면 외국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는 中間線으로 하되 외국과 합의한 中間線에 대신할 선이 있을 때에는 그 선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²⁰⁾ 그러나, 대륙붕의 경계를 언급한 제2조에서는 경계는 中間線으로 하되 외국간에 합의된 中間線을 대신하는 선이 있을 때는 그 선 및 이것과 접속하여 그어지는 政令으로 규정하는 선까지의 해역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韓日 大陸棚共同開發協定에 규정된 共同開發區域에 政令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 주권적 권리행사를 선언하고 있다.⁽²¹⁾

대부분의 섬나라가 그렇듯이 일본이 中間線을 대륙붕 및 경제수역의 경계확정상 일반 원칙으로 채택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나, 한국이 역시 中間線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채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여기서 한국측이 제시한 中間線은 제5조 2항에서 “그 선상의 각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中間線이 等距離線임을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면은 일본의 『排他的經濟水域 및 大陸棚에 관한法律』에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中間線은 기본적으로 等距離線이며, 이는 기점만 정확하게 주어진다면 컴퓨터에 의해서 작도가 가능하다.

그런데 어째서 일본은 經濟水域의 경계확정에 관한 조문을 대륙붕의 경우와 나누어서 규정하였을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남해의 대륙붕의 경계확정은 이미 中間線 原則에 의해서 확정된 바 있고, 이른바 한일간의 서남부에 있어서의 大陸棚共同開發區域 설정은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가 北海大陸棚事件에서⁽²²⁾ 『衡平의 原則 (equitable principles)』을 대륙붕 경계확정의 대원리로 선언한 이래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일본에 대하여 中間線 原則을 표방하던 종래의 입장을 뒤엎고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이 연결된다는 원칙을 선언하여 일본과 협상을 전개한 결과 일종의 타협안으로 경계확정을 50년 후로 미루고 大陸棚共同開發區域을 설정하였던 것이다.⁽²³⁾ 한일간에 이미 합의한 남해 대륙붕 경계는 이미 中間線 原則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일본의 『排他的經濟水域 및 大陸棚에 관한法律』에서 말한 “외국과 합의한 中間線”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同法 제2조에서 “외국과 합의한 中間線을 대신하는 선이 있을 때에는 그 선 및 그 선과 접속하여 그어진 정령에서 정하는 선으로 한다”는 규정은 “외국과 합의”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 일본이 이를테면 韓日

(20) 排他的經濟水域 및 大陸棚에 관한法律, 平成8年 法律 第74號.

(21) *Ibid.*

(22)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ICJ Report*(1969), at 3.

(2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구역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제31조 2항. 1974년 1월 30일 서명, 1978년 6월 22일 발효. 외무부, **조약집**(양자조약 제7권), 426-483.

大陸棚共同開發區域에서 장차 中間線과 달리 경계획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애매하고도 심지어 어색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본 법조문은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 거의 전체에 대한 일본의 잠재적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의 上部水域에 관한 한 한국은 中間線 以遠에서는 이미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中間線 외측에서 있어서의 권리 행사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의 上部水域에 있어서 中間線까지 주권적 권리 행사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에 있어서는 해역 전부가 주변국의 200마일 거리에 들어오므로 이 해역에 있어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은 대륙붕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처럼 『排他的經濟水域法』 하나만으로도 가능할 것을 일본 정부가 이를 굳이 『排他的經濟水域및大陸棚에관한法律』로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나누어서 규정한 것은 일견 어색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을 간파해야 한다.⁽²⁴⁾ 일본은 대륙붕도 경제수역과 마찬가지로 중간선으로 획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에 있어서만은 대륙붕에 관한 경계획정권리를 유보한 채 그 上部水域에 있어서의 잠재적 권리를 따로 떼어내어 이를 경제수역법으로써 규정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째서 적극적인 입법을 피하고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中間線 以遠에 있어서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있는가? 이러한 소극적 입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 上部水域에서 앞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大陸棚共同開發區域은 대부분이 中間線 以遠에 존재한다. 그 上部水域은 새 해양법상 이미 公海가 아니며, 일본이 최근에 제정한 『排他的經濟水域및大陸棚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는데도, 우리 정부는 고작 한다는 것이 『배타적경제수역법』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中間線 以遠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포기를 한 것이다. 일본은 공격적으로 일응 없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법률까지 만들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일응 존재하는 권리를 법률에조차 방기하고 있으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일본은 이미 이른바 200해리 경제수역 개념이 거리 개념이라는 점을 앞세워 대륙붕조차도 거리 개념으로 파악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오다 시게루(小田 滋)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앞세워 거리개념에 의한 경계획정 이론의 확산 운동을 전개해 왔다.⁽²⁵⁾

(24) 앞의 주 19와 20 참조.

(25)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Tunisia/Libyan Arab Jamaririay), *ICJ Report*(1982), at 157-273 passim.

VI. 單一海洋境界線의 便宜性和 必要性

원래 大陸棚의 개념은 그 上部水域인 공해의 자유와 관계없이 해저에 관한 권리로 발달해 온 까닭에,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는 그 上部水域에 있어서의 어업에 관한 권리나 공해의 자유와 같은 보편적인 권리와는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200마일 경제수역제도가 탄생하고 대륙붕도 종래의 지질학적인 대륙붕의 개념에서 200마일 경제수역에 대륙붕도 포함되며 200마일 이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지질학적으로 대륙과 관련이 있는 대륙변계(continental margin)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대륙변계라고 하여 무작정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륙붕이 200마일을 넘는 경우 그 외적 한계는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350마일을 넘거나 2,500미터 수심을 연결하는 선인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마일을 넘을 수 없다.⁽²⁶⁾

그렇다면 200마일 이내에서의 대륙붕이란 도대체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200마일 이내의 海底와 그 上部水域에 있어서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저인 대륙붕이 경제수역이라는 주개념 속에 포섭되어 버린 것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륙붕은 경제수역과 생성된 경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새 해양법에서도 별도의 장으로 독립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경제수역의 해저 및 그 하층토에 관한 권리는 대륙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²⁷⁾ 따라서 대륙붕과 경제수역의 관계는 비록 권리의 성질상 200마일 이내에 있어서 해저의 권리가 중복되는 것이 사실이나, 200마일 이내에서 대륙붕 자체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200마일 이원에 있어서는 지질학상 대륙과 관련이 있는 대륙변계(continental margin)가 계속되는 한, 새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륙변계의 한계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그 발생 연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200마일 이내에서는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海底 및 그 下層土에 관한 권리나 대륙붕에 관한 권리나 동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마일 이내에 있어서 대륙붕의 개념과 경제수역의 개념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자유다. 이미 파푸아 뉴기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체결된 토레스(Torres) 해협에 있어서의 大陸棚과 그 上部水域의 경계선을 분리하여 획정한 것처럼, 이를 분리하여 획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

(2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6조 5항.

(27) *Ibid.*, 제56조 3항.

러나, 토레스 해협에 있어서는 파푸아 뉴기니 어민들의 전통적인 어업과 해상 생활 양식을 오스트렐리아가 양해한 상태에서 그러한 경계획정이 가능하였던 것이며, 기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大陸棚의 경계와 上部水域의 경계를 합쳐서 單一海洋境界線(single maritime boundary)으로 획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單一海洋境界線으로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한 200해리 내에서 경제수역의 개념상 경제수역이 대륙붕과 상부수역을 합친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더욱 하나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편의로울 뿐더러 이치에도 맞는다. 1982년 미국과 캐나다는 特別協定을 체결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單一海洋境界線으로 메인灣의 경계를 획정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국가간 해양경계 획정을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토레스(Torres)해협에서와 같이 大陸棚과 그 上部水域의 경계선을 달리 획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경계선을 달리하면 그만큼 관계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동일한 해역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의 경우도 협정 후 50년이 되는 서기 2028년에 가서 경계획정을 하게 될 때에는 역시 가급적이면 單一海洋境界線으로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Ⅶ.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 上部水域에 대한 權利

그런데 앞에서 밝힌 대로, 일본은 최근 『排他的經濟水域및大陸棚에관한法律』을 제정하면서 거의 전부가 韓日 中間線의 일본쪽에 있는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의 上部水域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排他的經濟水域法』을 제정하면서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中間線 外側에서는 사실상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듯하다.⁽²⁸⁾ 이렇게 말하면, 정부 당국은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은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부는 일본이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 上部水域에 대해 대륙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경제수역상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의 법률규정을 그들이 최근에 제정한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에 두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째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가?

1996년 봄 우리나라와 일본이 새 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排他的經濟水域法の 제정을 준비할 단계에 일본 정부의 초안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는데도,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배타적경제수역이란 거리 개념

(28) 앞의 주 19와 20 참조.

이므로 中間線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라, 새 해양법협약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확정하는 규칙인 제 74조 1항과 대륙붕의 경계를 확정하는 규칙인 제83조 1항은 놀랄 만큼 동일하다. 어디에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할 때 中間線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쓰여 있는가?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둘 다 모두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²⁹⁾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적용해야 할 법의 원천으로 국제협약과 관습 및 법의 일반원칙을 들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부수적인 것으로 국제관례나 제국의 최고 학자들의 학설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衡平과 善(ex aequo et bono)에 의해서도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계획정시 적용할 국제관습법을 선언했다고 생각되는 北海大陸棚事件에서도, 경계획정은 모든 關係事情을 고려하여 衡平의 原則에 의하여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³⁰⁾

우리가 만일 지금 일본 정부가 中間線 原則을 『排他的經濟水域 및 大陸棚에 관한法律』에 대원칙으로 선언하고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 上部水域을 갖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이를 포기한다면, 이는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 上部水域에 대한 권리,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大陸棚共同開發區域 上部水域의 적어도 200마일까지에 달하는 經濟水域의 上部水域 외연까지의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는 上部水域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協定상 협정이 발효한 1978년으로부터 50년이 되는 2028년 大陸棚共同開發區域의 경계를 획정하게 되는 날, 우리가 공유지분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륙붕—예컨대 적어도 현재 大陸棚共同開發區域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륙붕—을 잃어버리는 기연을 마련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 上部水域에 대해 적어도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協定상 경계획정을 유보한 2028년에 가서 이 해역에 대한 경계획정을 할 때까지 일종의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설정할 것을 제의하고 일본의 관계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이 해역에 있어서만은 배타적경제수역 개념이 확립된 이상, 大陸棚과 아울러 그 上部水域도 단일 체제로 묶어서 일본과 “共同管理水域”으로 정하는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

(29) The delimitation shall be effected by agreemen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as referred to in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order to achieve equitable solution.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제83조 참조.

(3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Para. 101, *ICJ Report*(1969), at 3, 53.

우리는 이미 확보한 大陸棚共同開發區域에 있어서의 대륙붕지분의 잠재적 절반을 가지고 中間線 以遠에 있는 大陸棚共同開發水域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2028년에 가서 합의에 의해서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끝내 국제재판을 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는 국제재판에서 완벽한 승리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부분적인 승리는 가능할 것이다.

VIII. 中國의 經濟水域에 대한 對日本政策에서 배울 점

1996년 5월 11일 中國 外交部 副部長이 全國人民代表者會議에 유엔해양법협약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이 비준동의안은 5월 15일 全國人民代表者大會에서 처리되었다. 外交部 副部長은 이 동의안의 제안서에서 중국이 해양법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중국의 영해가 37만 평방킬로에서 300만 평방킬로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를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종래에 중국은 自然的 延長說에 기한 중국대륙의 自然的 延長을 중국대륙붕의 외적한계이며 대륙붕의 경계는 衡平의 原則에 기해 관계국간에 協議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고,⁽³¹⁾ 이러한 기본적 입장 위에 경제수역의 권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1996년 4월 동경에서 있었던 일본과 중국간의 해양에 관한 회담에서도, 이어서 서울에서 5월 3일과 4일에 열린 韓中 漁業會談에서도, 中間線에 의한 경제수역의 설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에서 나타났다.

결국, 外交部 副部長이 全國人民代表者會議에서 말했다는 바와 같이 해양법협약 비준으로 “중국의 영해가 37만 평방킬로에서 300만 평방킬로로 늘어나게 된다”는 말은, 중국 각처에서 모여든 국제법에 밝지 못한 대표자들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여, 적어도 중국의 바다가 열배나 넓어지게 된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지만, 外交部 副部長이 언급한 300만평방킬로는 隣接 또는 對向하는 국가와 中間線으로 나누었을 때의 면적과 아주 멀지는 않은 것이므로 중국이 최후의 대안으로 中間線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각기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中間線을 경제획정의 일반 원칙으로 삼은 데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종래에 대륙붕의 경계에 대하여 주장해 오던 해양경계획정 이론에서 그

(31) 人民日報, 1973. 3. 15日字, 1974. 2. 4日字,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1973. 3. 16, 1974. 2. 6 각각 외무부 성명을 통하여 중국측과 언제라도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다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이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中間線을 설정하면, 중국어선이 한국의 수역에서 잡는 어획고가 한국 어선이 중국의 수역에서 잡는 어획고의 근 5배에 이르고 있는 상태에서 얻는 이익을 쉽사리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³²⁾ 여하한 명분을 사용해서라도 이러한 기득권 아닌 기득권을 확보하려 할 것인데, 그 가운데 그럴듯한 명분 하나가 中間線原則에 반대하거나 해양경계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중국은 황해에 있어서는 中間線 이외에 다른 경계선을 주장할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다. 중국은 북한이 1977년 군사경계수역을 중간선과 유사하게 선포하여 사실상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였는데도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바 있다. 황해 북반부의 지리적 사정은 황해 남반부와 그다지 다르지 아니하다. 대륙붕 역시 황해에서는 남이고 북이고 간에 단절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가 엄연한 아시아 대륙의 당당한 일부이므로 중국은 中間線 이외에 어떠한 衡平의 原則에 기한 다른 선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東中國海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東中國海의 대륙붕은 분명히 대륙의 自然的 延長으로 오키나와 해구에서 단절된다. 그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열도와 중국 대륙을 1:1로 대비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 東中國海의 이러한 지리적 상황은 흡사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렐리아 사이의 티모르 해구가 있는 해역과 흡사한 점이 있다. 티모르는 국가의 일부분인 섬이며 오스트렐리아의 풍부한 대륙붕으로 인하여 티모르 해구가 티모르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1989년에 체결되어 1991년에 효력을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East Timor)주와 북 오스트렐리아사이의協力區域에 관한條約』(The Treaty on the Zone of Cooperation between the Indonesian Province of East Timor and Northern Australia)에서는, 1972년에 양국 사이에 체결되었던 아라프라와 티모르 해역에서 티모르 해구의 단절된 사정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던 선례를 고려하여, 역시 경계선이 티모르 쪽으로 치우치게 확정되었고 그대신에 석유부존 가능성이 농후한 해역에 한하여 협력하여 대륙붕을 개발한다는 『協力的共同開發區域』을 설정하였다.⁽³³⁾

이러한 선례를 보는 중국의 입장으로서서는 東中國海에 관한 한 섣불리 中間線을

(32) 앞의 주 16 참조.

(33) Australian Treaty Series 1991, No. 9. 1990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469.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Indonesia Establishing Seabed Boundaries in the Area of the Timor and Arafura Seas, Supplementary to the Agreement of 18 May 1971, October 9, 1972, United Nations, *National Legislation and Treaties Relating to the Law of the Sea*, UN Doc. ST/LEG/SER.B/18, at 441 (1976).

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 대표는 1996년 4월 동경에서 열렸던 일본측과의 해양회담에서 어업에 관한 경계선도 대륙붕의 自然的 延長說에 따라 協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국 대표의 주장은 언뜻 보면 거리 개념이 흥미하는 200해리 시대에 웬 똥단지 같은 소리냐고 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중국의 주장은 일리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옳다. 우리가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의 上部水域에 있어서 대륙붕과 경제수역을 일체로 보아 單一海洋境界線을 주장해야 하고 한일간의 中間線 以遠의 共同開發區域 上部水域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중국도 東中國海에서 중국과 일본간의 中間線의 일본쪽의 상당한 부분에 중국 대륙붕이 계속된다고 생각되는 해역에까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가 적어도 대륙붕에 관하여 한일 양국간의 주장이 겹치는 부분에 대하여 共同開發區域을 설정한 예를 참고로 하여 중복 해역을 共同開發區域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요는 중국이 東中國海의 해양경계선 확정문제를 위요한 일본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자국의 입장을 관철해 내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중국이 경제적인 여건이나, 인민해방군출신의 원로 중심으로 된 의사결정 체제상의 비능률성 등 제요인으로 인하여 일본의 집요한 협상력에 밀리게 된다면, 이는 일본이 내거는 中間線 이론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바로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協定상의 共同開發區域의 海底 및 上部水域의 영역 다툼 문제에까지 비화될 수 있다.

IX. 結 論

平和線은 1965년 韓日漁業協定の 체결로 인해 이미 사문화 되었었는데 이제 1996년 봄에 排他的經濟水域法이 제정됨으로써 사실상 우리 법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 동안 중국은 韓日漁業協定으로 사실상 반사적 이익을 얻어 왔다. 그리하여 중국 어선떼들이 우리 어장에 침입하여 어망을 찢고 남획을 일삼아도 중국에 대하여 유화정책이니 뭐니하며 저자세를 취하는 데 익숙한 우리 정부는 이에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해에 있어서 중국어선떼들이 한중간 가상의 中間線의 우리쪽 수역에서 잡는 어획고가 中間線의 중국쪽 수역에서 우리가 어획하는 것보다 5배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³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정한 排他的經濟水域法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平和線처럼 무색해질 수

(34) 외무부, 배타적경제수역법안 입법예고(안), 수산청 통계, 별첨 참고자료, 1996년 5월 1일.

도 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平和線 宣言이고 排他的經濟水域法이고 간에 이웃나라의 국내법에 불과할 것이다. 중국어민들이 한국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문제는 다시금 한중 양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양국간의 교섭 대상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와 대중국 시장진출 등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우리 정부가 다시금 해양에 관한 대중국 宥和政策을 편다면 經濟水域法은 平和線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1952년 1월 18일에 선언한 平和線이 인접해양에 대하여 국제법상 『있어야 할 법』(lege ferenda)의 등장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이정표를 설정한 국가행위였다면, 1996년 제정한 排他的經濟水域法은 국제사회에 『지금 있는 법』(lege lata)의 실시를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엄연히 세계 각국이 앞을 다투어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고 200마일 해역에서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강력한 이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본과 중국에 宥和政策을 취한답시고 인접 해양에까지 이들에 거슬리는 주장을 자제하는 용졸한 정책을 편다면, 이는 한때 이나라가 이들 나라의 속국 내지 식민상태에 있던 시절에 그 사슬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독립운동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 나라의 건국이념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국가 이익을 사수하기 위하여 법적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 국제법상 어엿이 우리에게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조차 우리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이를 방기한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가 이웃 강대국에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조 중기에 왜구에 空島政策을 쓰던 조선은 끝내 왜국에게 망했다. 그 망국의 空島政策 때문에 우리가 1905년 독도를 빼앗겼었고 지금도 일본과의 독도 논쟁에서 일본에게 덜미를 잡히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륙붕과 경제수역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를 우리 강토의 일부에 버금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우리가 당연히 차지하여야 할 한치의 해역도 마땅히 우리가 차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가다듬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Résumé〉

Certain Issues on Maritime Jurisdic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the Proclam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ang-Myon Rhee*

As a result of the proclamations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by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spring of 1996, old regimes on the law of the sea in the Northeast Asia come to face with the fate to be replaced by new ones based on the new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atified by these three countries at the similar time when they proclaimed the EEZ. However, such old regimes as 1965 Japan/Korea Fisheries Agreement which was mainly based on the 1958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still survives as a special law, still effective despite the ratifications of the new Convention. Korea, whose fishermen frequent the fishing grounds off the coasts of Japan in much larger number than Japanese fishermen do off the coasts of Korea, is apparently not in a hurry to negotiate a new fisheries agreement with Japan.

However, it is logical, though not practical for the time being, to conclude a new fisheries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based on the new Convention. The apprehension that the delimitation of the EEZ is *quid pro quo* for a new fisheries agreement brought about the controversy over Tok-to islet again. Koreans have been furious about the Japanese ambition to include Tok-to, which they call Takeshima, in the Japanese EEZ by using it as a base-point in delimiting the EEZ, because Tok-to is historically and legally Korean territory. It was only in 1904 when a Japanese local government, Shimane-ken, secretly annexed it, when the then Korean government was virtually under Japanese control. After the World War II the islet was returned to Korea by the UN Command. Many Japanese scholars also believe that Tok-to is a part of Korean territory.

Thus since Tok-to is Korean territory, the EEZ emanating from Tok-to is natu-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ally Korean maritime area. Tok-to could be treated as island, which can sustain human habitation, in the sense that a village can easily be established therein after the reclamation of the foreshore between the two islets of Tok-to, and that the people therein could enjoy a certain degree of economic life of their own by fisheries and tourism.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Korean government must not give up its possible use of Tok-to as a base-point in delimiting the EEZ, and that it must exercise its sovereignty in the entire EEZ area emanating from it.

The status of the superjacent waters over the joint development area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Japan and Korea has not been decided. Since it is highly probable that a single maritime boundary is to be delimi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2028, it is necessary and convenient to manage the superjacent waters jointly until the time when the joint development area is divided. Article 5 paragraph 2 of the Korean EEZ Law, where in Korea apparently gave up its right on the Japanese side of the median line until the time of final delimitation, is provided neither logically nor wisely. In this regard, Korean government should learn a lesson from the Chinese who would dare to apply the principle of natural prolongation, which used to be a kind of principles in delimiting the continental shelf, in negotiating fisheries agreement in the East China Sea.